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6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회 사	삼성증권

2. 조치내용

가.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삼성증권㈜ : 과태료 1,000백만원 부과

- 조치사유 :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

3. 조치이유

가. 자기주식 매매금지 의무 위반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○ 甲 등 영업점 직원 X명은 20XX. X. X. ~ 20XX. X. X. 기간 중 고객 X명에게 A사 주식의 매매(312억원, 139회)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,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9호